

판결문 분석을 통한 방화현장조사 연구

A Study on Incendiary Fire Investigation through Analysis of the Decision

(주)성도엔지니어링 김영철 · (주)건원엔지니어링 차종호*

Sungdo Eng. Kim Youngchul · Kunwon Eng. Cha Jongho*

요약

화재발생시 경찰, 소방 등 행정관서는 현장통제·초동조치, 응급구조·진화작업, 화재조사 및 수사, 화재증명 발급 및 통계작성, 피의자(원인 제공자) 입건 및 송치를 담당하고 있고, 검찰청은 수사보완 및 기소, 법원은 형사 및 민사재판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책임과 보상관계를 판가름하게 된다.

물론 이재관계자의 합의, 화재보험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도 하나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을 불모로 하여서는 않되므로 화재원인의 명쾌한 규명으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키워드 : 방화, 화재조사, 물증, 판결문

1. 서 론

과학기술의 발달은 각종 건축물에 다양한 재질

의 자재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연소(燃燒)의 특성상 초기진화에 실패할 경우 주변으로의 연소(延燒) 확대로 인해 다수인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있으며, 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각종사건·사고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물론 이재관계자의 합의, 화재보험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도 하나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을 불모로 하여서는 않되므로 화재원인의 명쾌한 규명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나, 화재의 특성상 물증 또한 소훼하게 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어려우며 특히 방화의 경우 증거인멸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물증에 의한 입증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2006. 7. 19 발생한 잠실고시원 화재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향후 화재조사시 방화에 대한 입증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잠실고시원 화재

2.1 사건개요

2006. 7. 19. 15:50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208-1 소재 대보빌딩 지하 1층 파워노래방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해 지하노래방과 지상 2~4층이 소훼되면서 3, 4층 고시원(나우고시텔)내 입주해 있던 재실자 중 8명이 사망, 12명이 중·경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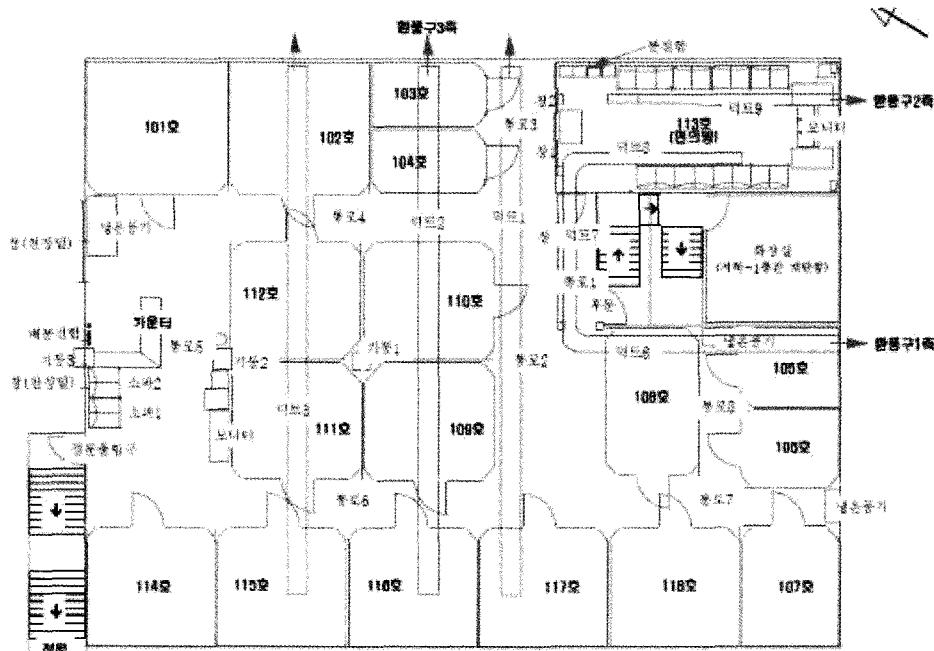
방화자는 파워노래방 업주로서, 노래방 영업이 부진하고, 3층 고시텔에 거주하는 내연관계에 있는 여인이 최근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화재발생 당일 음주 후 자신의 노래방에 들어와 내연녀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만나주지 않자 ‘윽’ 하는 기분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VIP룸 쇼

파위에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서, VIP룸 내부가 연소되어 발생한 화염 및 연기가 인접해 있는 노래방 후문을 통해 연소확대되면서 옥상으로 통하는 건물 계단으로의 굴뚝효과에 의해 수직상승 전파되는 화염 등이 2층 사무실 입구 일부가 소훼되었으며, 방화문 없이 미닫이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던 3, 4층 고시원 내부 재실자는 화염, 연기 등에 의해 미처 대피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2.2 판결문(발췌)

2.2.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

판 결
사 건 2006고합236 가. 현주건조물방화



[그림 2-1] 노래방 평면도

치사	생략)
나. 현주건조물방화	
치상	증거의 요지
다. 음반·비디오물	(생략)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의 방화 여부에 관한 판단 (전반부 생략)
피고인 정OO, 노래방 운영	
검사 형종근	
변호인 변호사 이상철, 안정훈	5. 증거관계의 검토
관결선고 2007. 1. 12	가.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정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라이터 1개(중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208-1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인 대보빌딩 지하 1층에서 '파워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하

그렇다면,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들에 덧붙여, 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순간에 화재가 발생한 지하 층의 노래방 안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던 점, ② 소방관으로서 화재 직후 화재원인과 주변 상황 등을 탐문하였던 권영석은 일반적으로 화재현장의 피해자들은 불이 나면 빨리 끌어 달라고 하는 등 흥분된 상태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데 노래방 업주인 피고인은 오히려 여유 있게 자신의 노래방에는 불이 나지 않았다고 하여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는 점, ③ 목격자인 박



〈사진 2-1 화재현장 전경〉

종현, 황민우도 노래방 정문에서 연기가 나고 노래방 주인인 피고인이 그 앞에 있었는데 태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일단 피고인이라고 의심되며, 앞서 살펴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이나 13번 룸 내부의 소재, 불이 번진 속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화보다는 방화의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담배를 피운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이상, 결국 이 사건 화재는 일단 피고인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함이 상당하다.

(이하 증략)

라. 방화의 동기

한편, 방화사건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동기범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노래방의 영업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로 인해 죄00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던 중, 죄00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노래방에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방화를 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하 생략)

6. 소결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범죄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

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비록 단독으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가진 직접증거는 없다고 하겠으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생략)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범죄는 피고인이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 지하에 방화를 하여 그 불이 순식간에 건물 계단을 통해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8명의 사망과 13명의 부상 및 17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스스로도 어린 시절 화재로 인하여 온 몸에 화상을 입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자로서 누구보다도 화재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3,4층에 고시원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더욱이 그 고시원은 좁고 열악한 환경에 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많은 수의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에 불이 날 경우 수많은 죄 없는 피해자들이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동기도 전혀

없이 이 사건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른 진정한 동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할 때 언급했던 노래방 영업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최00과의 관계악화로 인한 순간적인 울분 등은 결코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고, 무고한 수많은 생명을 앗아버린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는 법언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진실로 뉘우치며 반성을 보이기는 커녕, 경찰조사과정에서 그 책임을 느끼고 범행을 자백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화범행이 피고인 혼자만 존재하던 현장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여, 검찰 아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마저 인정하지 않으며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진술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죄질을 낮추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하여도 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의심받았던 것과 같이 보험금을 노리거나 자신의 화상을 비관하여 타인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는 등과 같은 동기에 기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평소 보여 온 행적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적 있듯 이 불을 지른 후 화장실에 갔다 와서 바로 끄려고 했으나 술에 취해 그만 이를 잊어버렸다가 불길이 예상 외로 크게 번져자 겹이 나 도망 나

온 것으로 볼 여지도 전혀 없지 않아,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사유가 되는 제반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구형한 사형만은 면하도록 하되, 앞서 살린 바와 같은 모든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와 격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홍
판사 박성준
판사 정수진

2.2.2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문

판 결

사 건	2007노325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과한법률위반
피 고 인	정OO, 노래방 운영	
검 사	OOO	
변 호 인	변호사 OOO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 12. 선 고 2006고합236 판결
판결선고		2007. 5.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은 모두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생략)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전반부 생략)

(마) 방화방법의 특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두루마리 휴지를 13번 룸 안에 있던 소파에 풀고 소지하고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 다른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3번 룸 내부에서 초기 착화나 발화원을 추정할 만한 특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13번 룸과 유사한 벽면에서의 실험결과 작은 불씨에 의해서는 착화하기 어려웠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파에 화장지를 놓고 불을 붙였을 때는 착화가 매우 쉽고, 타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다(감정서 별첨 사진 38, 40, 31 참조).

(생략)

(사) 방화의 동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방화의 동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3층에 소재한 고시원 309호에 거주하는 죄00을 소개받아 사귀다가 위 노래방의 영업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로 인해 죄00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던 중, 동네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위 노래방에 방화하기로 마음먹고’라고 적시되어 있다.

(생략)

(아) 압수된 휴대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방화 범행에 사용한 물건이라고 하여 압수된 휴대용 라이터 1개를 증거물로 제출하였으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라이터는 화재가 진압된 이후 노래방 카운터 근처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평소 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던 것인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라이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가방에서 위 라이터 1개가 들어있던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라이터를 사용하여 노래방 13번 룸 안에 있는 소파에 불을 놓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생략)

(5)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 611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염두에 두고 위에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화재는 13번 룸 안에서의 인위적인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피고인 이외에 제3자가 노래방에 불을 냈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와 같이 불을 낼 수 있는 자가 피고인 이외에는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방화방법도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특정되지 못하고 이 사건 화재 전후에 피고인의 언동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

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 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따라서 별다른 방화 동기도 없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횃김에 불을 놓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이 거시하는 여러 가지 간접증거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협의를 두기에는 충분하다 하겠으나, 그것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는 바, 이 부분은 원심 판시 제2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하 생략)

재판장

판사 심상철

판사 반정우

판사 나상용

3. 판결문 분석

본 건 화재에 있어 현장조사시 관계기관에서 나름대로 완벽한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화재 원인을 방화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은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의 방화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증거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고찰하여야 하는 바, 화재현장조사시 방화의 가능성에 대해 유념하여 채증 등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위 사건은 1, 2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찰 측에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임).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문제점

화재는 증거인멸의 수단으로서 특히 방화의 경

우 화재원인은 방화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문제 점이 있으며, 본 건 화재와 같이 범죄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법정에서 부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방화의 경우 점차 복잡하고 다양한 수법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지고, 또 자신의 부재 증명(alibi)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루어 지므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무죄로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구조적으로 과학수사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조사기관에서는 무죄판결에 대한 회의, 의구심 등으로 점차 화재조사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4.2. 개선방안

4.2.1 발화부 판단

위 사례에서 노래방 내부 VIP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노래방 후문을 통해 주계단으로 연소화 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노래방 주출입구 인근 소파 및 카운터 일대 연소상황은 VIP실 화재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발화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며, 판결문에서도 노래방 업주가 VIP실 내부에서 휴지를 풀고 라이터로 방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심판한 점은 본 건 화재의 발화부를 VIP실로 국한된 것인 바, 화재에 있어서 발화부 판단이 최우선 되어야 함이 간과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화재조사보고서에는 발화부라는 항목을 별도로 지정하여 발화부로 판단, 인정하게 된 근거를 작성, 적시하게 함으로써 발화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4.2. 채증의 중요성

발화부내 최초 연소하게 된 가연물(first ignition fuel)과 점화원(ignition source)을 규명하기 위해 발화부를 정밀조사(감식)함으로써 채증에 의한 화인 입증이 중요하며, 소훼에 의해 물증채취가 곤란하더라도 현장발굴시 증거물 규명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무릇 직접증거에 의한 화인입증은 곤란하더라도 정황증거를 제시하는 등 방법에 의해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수사담당자는 피의자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을 진술하게 한다면 추후 법정에서 부인한다 하더라도 증거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5. 결 론

산업화에 따른 경쟁사회화, 개별화가 극심해지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사회적 범죄로서 방화가 증가하게 됨은 선전국 사례는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일부소외계층이 극단적 방법으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화, 모방방화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화재발생의 원인중 방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 정도로서 비교적 낮은 수치로 되어 있으나, 외국의 경우 방화가 20%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화재원인도 실제 20%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예로서 대구지하철 방화 같은 사례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비한 철저한 현장조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화재현장조사시 방화가능성을 배제하여서는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 또한 중

요한 착안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송재철, “수사실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0
2.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2006. 12. 27 소방방재
청훈령 제106호
3. NFPA 921, “Guide for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ions”, NFPA, 2004
4. John D. DeHaan, “Kirk's Fire Investigation”,
Prentice Hall, 2002
5. 대법원, www.scourt.go.kr
6. 김영철, “한국의 화재원인조사의 방법에 관한
연구”, 2003